라이나생명
A Chubb Company

무배당 비흡연자할인특약Ⅱ

약관

목차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3
제1조 【목적】 3
제2조 【용어의 정의】 3
제2관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3
제3조 【계약 전 알릴 의무】 3
제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4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4
제5조 【'적용대상상품'에 관한 사항】 4
제6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4
제7조 【특약의 보장개시일】 4
제8조 【피보험자의 범위】 4
제9조 【피보험자의 가입 자격 및 흡연 검사】 4
제10조 【특약의 감액】 4
제11조 【흡연 상태 변경 통지 및 흡연 상태의 변경이 있을 때의 처리】 5
제4관 해약환급금 등 5
제12조 【해약환급금】 5
제13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5
(별표1) 비흡연체 할인 적용대상상품 목록 6

무배당 비흡연자할인특약Ⅱ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목적】

이 특약은 주된 보험계약(이하 '주계약'이라 합니다)에 부가되어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흡연여부에 따른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주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나.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마.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바. 표준체: 표준체는 건강상태에 따른 보험료 할인·할증을 적용 받지 않는 일반적인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 사. 비흡연체: 비흡연체는 제9조(피보험자의 가입 자격 및 흡연 검사)에서 정한 흡연상태와 가입자격을 모두 충족한 피보험자를 말합니다.
2.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연단위 복리 예시】
     원금 100원, 연간 10% 이자율 적용시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2년 시점의 총 이자 금액
     - 1년차 이자 = 100원(원금) × 10% = 10원
     - 2년차 이자 = (100원(원금) + 10원(1년차 이자)) × 10% = 11원
     → 2년 시점의 총 이자금액 = 10원 + 11원 = 21원

   - 나.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갱신계약의 경우 갱신 시점)의 이율을 말하며, 평균공시이율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규 등의 변경으로 이 계약 갱신 시점에 평균공시이율이 더 이상 산출되지 않거나 발표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 대신 변경된 법규 등에서 정한 이율을 적용하며, 갱신 이후 적용될 이율을 계약자에게 안내합니다.
   - 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동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에 따른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 나.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4. 보험료 관련 용어
   - 가. 표준체 보험료: 비흡연체 할인이 적용되지 않은 별표1(비흡연체 할인 적용대상상품 목록)에서 정한 각 상품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산출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 나. 비흡연체 보험료: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비흡연체 할인이 적용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제2관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

제3조【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 할 때를 포함) '비흡연체 할인조건 충족여부 확인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

니다.

【상법 제 651 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3 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흡연체 할인조건 충족여부 확인서"의 질문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리지 않고 표준체 보험료 보다 적은 비흡연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회사는 보험금 발생여부와 관계없이 표준체 보험료 대비 비흡연체 보험료의 비율로 제 5 조('적용대상상품'에 관한 사항)에 따른 적용대상상품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이 특약을 해지합니다.

② 제 1 항의 경우 제 9 조(피보험자의 가입 자격 및 흡연 검사) 제 3 항에 따라 흡연 검사를 받고 비흡연체로 판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3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5조【'적용대상상품'에 관한 사항】

이 특약은 별표1(비흡연체 할인 적용대상상품 목록)에서 정한 상품에 대해 적용 가능하며, 이하 '적용대상상품'이라 합니다.

제6조【특약의 체결 및 소멸】

① 이 특약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주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을 청약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 특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1. 주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2. 이 특약이 적용되는 모든 적용대상상품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

제7조【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계약자의 청약이 있고, 회사가 이를 승낙한 경우에는 청약일 이후에 해당하는 보험료부터 비흡연체 보험료를 적용함과 동시에 이 특약의 보장이 개시됩니다.

제8조【피보험자의 범위】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피보험자는 제5조('적용대상상품'에 관한 사항)에 따른 적용대상상품의 피보험자 중 제9조(피보험자의 가입 자격 및 흡연 검사)의 자격을 갖추고 이 특약을 청약하여 회사의 승낙을 얻은 자로 합니다.

제9조【피보험자의 가입 자격 및 흡연 검사】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제1호에서 정한 흡연상태와 제2호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가입자격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합니다.

1. 이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피보험자는 이 특약의 청약일 기준으로 적어도 최근 1년간 어떠한 형태와 종류를 불문하고 담배를 피우거나 씹거나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이하 총칭하여 '흡연'이라 합니다.)하지 않은 자로 합니다.
2. 이 특약 가입시점의 피보험자 나이가 20세 이상인 경우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비흡연체'로 청약하거나 변경할 때(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제3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비흡연체 할인조건 충족여부 확인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는 피보험자의 흡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흡연 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특약의 감액】

① 계약자가 회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용대상상품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감액분에 대하여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②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으로 인하여 적용대상상품 중 회사에서 정한 최저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을 경우,

해당하는 적용대상상품은 감액일 이후 납입 해당 분부터 표준체 보험료로 변경됩니다.

제11조 【흡연 상태 변경 통지 및 흡연 상태의 변경이 있을 때의 처리】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30일(총 흡연 일수 기준) 이상 흡연을 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이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합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정산 차액'이라 합니다.)을 계약자가 추가 납입하도록 하며, 계약자는 비흡연체 보험료와 동일한 기준(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가입나이 등)으로 산출된 표준체 보험료를 향후 납입보험료로 적용하고, 이 특약은 장래에 향하여 해지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정산 차액만을 추가로 납입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제2항에서 정한 정산 차액 및 표준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회사는 표준체 보험료 대비 비흡연체 보험료의 비율로 적용대상상품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합니다.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통지 의무를 30일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 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⑤ 주계약의 보험기간 중 표준체형의 피보험자가 제9조(피보험자의 가입 자격 및 흡연 검사)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자격을 만족하고 계약자가 이 특약을 청약 한 때에는, 회사는 제7조(특약의 보장개시일)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청약한 날 이후의 해당 보험료부터 비흡연체 보험료를 납입하며, 보험료 변동 시점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정산 차액이 있을 경우 회사는 정산 차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관 해약환급금 등

제12조 【해약환급금】

제10조(특약의 감액) 제1항에 따라 적용대상상품의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한 경우, 감액 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은 이 특약의 부가로 보험료가 할인된 적용대상상품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제13조 【주계약 약관 규정의 준용】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별표1) 비흡연체 할인 적용대상상품 목록

비흡연체 할인 적용대상상품 목록

비흡연체 할인 적용대상상품
무배당 라이나다이렉트암진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무배당 라이나다이렉트소액암진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무배당 라이나다이렉트 7 대고액암진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무배당 라이나다이렉트전이암진단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무배당 라이나다이렉트암직접치료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무배당 라이나다이렉트갑상선암·기타피부암직접치료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무배당 라이나다이렉트항암중입자방사선치료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
무배당 라이나다이렉트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특약(해약환급금미지급형Ⅱ)